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4가단2094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윤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여의주, 김백용

피고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E

변론 종결2024. 7. 5.

판결 선고2024. 8. 9.

주 문

1. F과 피고가 2023. 7.경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F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1	B	11,411,252	대전지방법원2023카확21123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2	B	5,716,371	대전지방법원2023카확21125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3	A	1,105,920	대전지방법원2023카확107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B	1,105,920		
4	A	1,858,185	대전지방법원2023카확21124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C	1,858,185		
5	A	7,871,514	대전지방법원2023카확21126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C	4,943,139		
6	A	2,669,539	대전지방법원2023카확21272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B	2,669,539		
C	2,669,539		
합계	A	13,505,158	
B	20,903,082		
C	9,470,863		

나. 원고들은 G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1	A	1,213,835	대전지방법원2022카확20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C	1,213,835		
2	A	2,072,234	대전지방법원2022카확21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B	2,072,234		
C	2,072,234		
3	A	2,672,243	대전지방법원2023카확22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B	2,672,243		
C	2,672,243		
4	B	2,894,986	대전지방법원2023카확23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5	A	938,835	대전지방법원2023카확24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1	A	1,213,835	대전지방법원2022카합20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C	938,835		
합계	A	6,897,147	
B	7,639,463		
C	6,897,147		

다. F은 원고들에 대한 위 나.항과 같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외에 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2023.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F에 대하여 채무액보다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F은 원고들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상계를 피하고자 원고들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이므로, F과 피고가 2023. 7.경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F과 피고가 2023. 7.경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F과 피고 사이의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광열

별지

1) 원고는 피고가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 반환되었음을 통지하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는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참조), 제3채무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청구한 것으로 설행한다.